

안양시 물가안정을 위한 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2000. 5. 15 규칙 제1069호
일부개정 2014. 12. 24 규칙 제1410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 12. 18 규칙 제1438호(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6. 6. 29 규칙 제1446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9. 18 규칙 제1543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7. 10 규칙 제1569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권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8>

제2조(대상업종)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숙박,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9. 9. 18>

② 삭제 <2019. 9. 18>

제3조(명령 및 검사 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령 및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 9. 18>

1. 보고·자료제출 명령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 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에 다시 가격을 인상한 업소

다. 동일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방해하는 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

가. 자료제출 명령과 독촉장을 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

나. 보고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업소

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9. 18]

제4조(명령 및 검사 절차) 명령 및 검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8>

1. 보고·자료제출 명령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은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자료제출은 명령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 발급은 2회에 한정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

가. 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할 때 관계인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9. 18]

제5조 삭제 <2019. 9. 18>

제6조 삭제 <2019. 9. 18>

제7조(자인서) 관계 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와 관련하여 위법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사한 경우에는 업소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자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제목개정 2019. 9. 18]

제8조 삭제 <2019. 9. 18>

제9조 삭제 <2019. 9. 18>

제10조 삭제 <2019. 9. 18>

제11조 삭제 <2019. 9. 18>

제12조 삭제 <2019. 9.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4 규칙 제1410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안양시물가안정에관한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권한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붙임6)와 같이 한다.

(붙임6) 생략

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9 규칙 제144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안양시물가안정에관한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권한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⑧ 생략

부칙 <2019. 9. 18 규칙 제15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규칙 제15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안양시 물가안정을 위한 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제정책과장”를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제정책과”를 “기업경제과”로 한다.

⑤ 생략

[별표 1] 삭제 <2019. 9. 18>

[별표 2] 삭제 <2019. 9. 18>

[별표 3] 삭제 <2019. 9. 18>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7. 10>

가격변동 내용 보고

수신 안양시장
참조 기업경제과장

년 월 일
발신업소(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격변동 내역

품목	전년말가격	현재가격	변동율	변동일자	비고

가격변동 사유

원가계산서 자료(전월 개월분)

수입액 (천원)		
항목별	금액	세부내역

지출액 (천원)		
항목별	금액	세부내역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자료 사본 첨부

기타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12. 18>

검사 기록(양식)

일련 번호	검사 일시	검사대상			주요검사 지도내용	검사자 (직,성명)	입회자 (직,성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생년월일)	소재지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9. 9. 18>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9. 9. 18>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18>

자 인 서

시설명(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보고·자료제출 명령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다 음

1.	
2.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안 양 시 장 귀하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9. 9. 18>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9. 9. 18>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9. 9. 18>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9. 9. 18>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9. 9. 18>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9. 9. 18>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9. 9. 18>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9. 9. 18>

